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1995.01.01. 발효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특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므로써 164개국에 참가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총 7부 73개 중에서 다음이 종자의 특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 제27조 특허 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 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부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환경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런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 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